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47호 / 2026년 10월 26일 / FAX(031)680-6865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지명파업이 그렇게 두려운가

- 사측, 7개월이 지난 지금 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가!

지난주 21일, 사측은 만도지부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산별전환 이후 7개월, 임단협 교섭 14차를 진행해 온 지금 당시 총회 소집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 절차를 문제 삼는 의도는 무엇인가?**

사측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의 투쟁인가? 앞으로의 투쟁인가? 만도지부는 지난 10/9일부터 잔업, 특근 통제에 들어갔다. 사측은 확보한 재고와 사무직 등의 생산지원으로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부분파업과 지명파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사측이 가처분을 준비한 것은 13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투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던 시기와 겹친다. 사측이 앞으로 확대될 투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사측은 특정 파업만이 아니라, 만도지부의 쟁의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장의 생산 차질을 막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의 교섭력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 임금안은 없고, 쟁의행위 금지 신청만 있었다!

지난 20일 14차 교섭에서도 사측은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 날 21일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측은 조합원의 요구에 답하기보다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무력화하는데만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이 노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 위반 아닌가?

사측이 답해야 할 것은 7개월 전의 절차가 아니라, 지금까지 외면해 온 조합원의 요구다. 교섭에서 해결할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지 말고,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명파업, 왜 필요한가!

- 투쟁의 효과는 높이고, 조합원의 부담은 줄이기 위한 선택!

잔업, 특근 통제에도 사측은 재고와 대체인력을 활용해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투쟁이 의미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만큼 사측도 노동조합의 지명파업 전술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명파업은 모든 조합원이 동시에 작업을 멈추는 대신 일부 조합원이 지정된 시간에 파업을 하는 방식이다. 사측의 대체 생산에 대응하면서 투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 조합원의 걱정과 부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명파업을 걱정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전체가 참여하는 파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합원 개인의 심리적 압박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지명파업은 사측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확보한 재고와 사무직 등이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투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사측은 임단협이 석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합원의 요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집행부도 이번 교섭과 투쟁을 무한정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임단협을 조기 매듭짓지 못하면 조합원의 임금손실은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명파업은 일부 조합원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우려를 말한다고 투쟁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생각을 존중하면서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만도지부는 조합원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며 나아갈 것이다.

□ 지금은 사무직 동지들의 이해와 도움이 절실하다!

사측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은 만도지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제한된다면 만도 전체 구성원들의 권리 요구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생산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무직 동지들의 처지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사무직 동지들의 이해와 도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현장과 사무직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일 수 있다.**